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요된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에는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전국건강보험협회나 건강보험조합, 각종 공제조합 등,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던 사람이 퇴직한 경우, 임의계속제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 (1)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이 30%가 됩니다.(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입원실 비용 등은 자비로 부담합니다)
- (2) 가입자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육아일시금 지급이 있습니다.
- (3) 가입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치렀을 때,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급부가 있습니다.

(가입하려면)

주민등록을 하고 입관법에 따라서 결정된 재류기간이 3 개월을 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도 입국목적 등을 고려하여 3 개월을 넘어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재류중의 분들중 진찰을 받는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광·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전입 신고 후에 시청 국민건강보험그룹 또는 각 지소·서비스 센터·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토일과 공휴일 제외)에서 수속을 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체류카드 등(유효한 외국인등록증명서 포함)
- 재류기간이 3 개월 이상인 사람은 앞으로 3 개월을 넘어 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재학증명서, 연수계획서 등)
- 직장의 건강보험을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자격상실증명서
- 여권
- 마이 넘버(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면허증, 여권 등)

(국민건강보험증)

가입하면 1 인당 1 장, 국민건강보험증이 발행됩니다.

진료하러 갈때는 반드시 지참하여 병원·의원 창구에 제시합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증을 반납합니다.

##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 인원수, 세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단위로 산정됩니다. 40 세이상 65 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개호납부금분을 가산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연간보험료 지불은 6 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 10 회지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에서 납부서가 오기때문에 지정일 까지 은행,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절차를 마치면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시에는 주민이 된 월(입국한 월이 아닙니다)부터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또한 근무처의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이탈한 달부터 보험료가 징수됩니다.

재해, 실업, 도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진료비가 일단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급부를 제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이 힘들 경우에는 시급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1) 주소변경(같은 시구정촌내에 이사한 경우), 세대주가 바뀌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증을 교환해야 하므로 지참해 주십시오.

(2) 전입

니시노미야시에 전입했을 경우는 전입 신고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수속을 해 주십시오.

(3) 전출

니시노미야시에서 전출하시는(출국하시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는 전출신고 후에 국민건강보험 탈퇴수속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증은 반납해 주십시오.

(4) 직장의 건강보험에서 탈퇴했을 경우

직장의 건강보험의 「자격상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격상실 증명서는 직장, 년금사무소, 건강보험조합에서 발행됩니다.

(5)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6) 사망했을 경우

(7) 보험증을 잃어버리거나 더럽혔을 경우 등

(8)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는 탈퇴하는 사람 전인원 분의 국민건강보험증과 새롭게 가입한 직장의 건강보험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직장보험에 가입하거나 시구정촌을 전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임의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 도중에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 보험료는 재계산되어 탈퇴후에도 정산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2년을 경과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퇴신고가 늦어지면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이라도 부과가 확정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마이 넘버(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합니다.

※ 어느 수속도 시청시민건강보험과 또는 각 지점, 서비스센터, ACTA 니시노미야스테이션에서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 (1)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 (2)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 (3) 단기체재인 사람
- (4)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5)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 ○특정건강검진과 특정보건지도

#### (특정건강검진)

대상은 실시년도 4 월 1 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실시년도 기준 만 40 세 이상 75 세 미만으로 건강진단일까지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 개호보험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등 후생노동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외)

요금은 무료이며,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진찰권이 발송됩니다. (전년도부터 특정보건지도 중인 경우 종료 후에 진찰권이 발송됩니다.)

연도 도중에 가입·탈퇴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특정건강검진과 동일한 내용의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합검진에 대한 진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조건 있음)

검진(종합검진 포함)을 받는 장소 등은 진찰권에 동봉되어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보건지도)

특정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습관병(성인병)의 발병 위험이 높고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생활습관병 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문 스태프(의사, 보건사, 영양관리사 등)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문의처	보험금부에 관해서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20
	가입 및 탈퇴에 관해서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17
	특정건강검진에 관해서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과	0798-35-3115
	보험료 지불에 관해서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국민건강보험수납과	0798-35-3091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